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 안전 관리 방법

제1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 안전 관리 강화, 온라인 외식서비스 경영 규범화, 외식 식품 안전 보장, 대중 건강 보장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 제3자 플랫폼을 통해서 혹은 자체 사이트를 구축하여 외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서비스 제공자 (이하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식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 식약품감독관리총국은 중국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 안전 관리 작업 지도를 책임지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실제 경영 매장을 보유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식품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 경영 허가증에 기재된 주업태, 경영 항목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경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통신 주관 부처 허가 후 업무일 30일 이내에 소재지 성(省)급 식약품감독관리부처에 신고한다. 자체 사이트를 구축한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통신 주관 부처에 신고한 후 업무일 30일 이내에 소재지 현(縣)급 식약품감독관리부처에 신고한다. 신고 내용에는 도메인, IP주소, 통신 업무 경영 허가증 혹은 신고 번호, 기업 명칭, 주소, 법정 대표 혹은 책임자 이름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지점을 설립할 때 설립 후 업무일 30일 이내에 소재지 현(縣)급 식약품감독관리부처에 신고한다. 신고 내용에는 지점 명칭, 주소, 법정 대표 혹은 책임자 이름 등이 포함된다.
식약품감독관리부처는 신고 정보를 사회적으로 즉시 공개한다.

제6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조사 등기, 식품 안전 불법 행위 제재 및 보고,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의 서비스 중지, 식품안전 사고 처리 등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며 인터넷 플랫폼에 관련 제도를 공개한다.

제7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전문적인 식품 안전 관리 기구와 식품 안전 관리 담당자를 배치하고 매년 식품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심사한다. 교육과 심사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한다. 심사 후 식품 안전 관리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경영 허가증을 조사하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명칭, 주소, 법정 대표 혹은 책임자 및 연락처 등 정보를 등기하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식품 경영 허가증에 기재된 경영 장소 등 허가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와 식품 안전 계약을 체결하여 식품 안전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제9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외식서비스 경영 활동 메인 화면에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경영 허가증을 공시한다. 식품 경영 허가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갱신한다.

제10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에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주소, 품질 등급 정보를 공시하고 공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제11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에 식품 명칭과 주요 원료 명칭을 공시하고 공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제12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무독, 청결한 식품 용기, 식기, 포장재를 제공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분해 가능한 식품 용기, 식기, 포장재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13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배송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한다.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배송 업체가 배송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한다.

제14조 배송자는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안전하고 무해한 배송 용기를 사용하며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세척 소독한다. 배송자는 배송 식품을 확인하고 배송 중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5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자체 사이트를 구축한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기록 의무를 이행하여 인터넷 주문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한다. 여기에 식품 명칭, 주문 시간, 배송자, 전달 시간 및 수령 주소가 포함되며 정보를 6개월 이상 보관한다.

제16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에 대해 샘플링 검사와 모니터링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재하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소재지 현(縣)급 식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한다. 심각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

제17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신고 제보 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공개 신고 제보 방식으로 소비자 식품 안전에 관한 신고 제보를 즉시 처리한다.

제18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외식 식품을 가공 제작할 때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원료 통제 요구 조건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원료 품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혹은 원료 생산 기지, 마트에서 원료를 구매할 때 증명을 위한 영수증과 입고 검사 기록을 남기고 식품 안전 표준 부적격 식품 및 원료를 구매하지 않는다.
(2) 가공 중 가공할 식품 및 원료를 검사하고 부패 변질, 유지 산패, 곰팡이와 벌레, 오염, 이물질, 가짜 혼입 혹은 관능 이상 상태를 발견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3) 식품 보관, 가공, 세척 소독 등 시설, 설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온, 냉장

과 냉동 등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점검하며 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4) 자신의 가공 조작 구역 내 식품 가공을 기타 식품 경영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
(5)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외식 식품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외식 식품의 품질이 동일해야 한다.

제19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배송자가 직접적으로 식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무독, 무해한 식품 용기, 식기와 포장재로 외식 식품을 포장하여 배송 중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0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배송 시 신선도 유지, 보온, 냉장 혹은 냉동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에 대해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관, 배송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국가 식약품감독관리총국이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성(省)급 식약품감독관리부처에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제22조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를 보고 받으면 즉시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제23조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제24조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거래에 대해 기술 모니터링 기록한 자료는 법에 의거하여 관련 사실 인증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소비자가 신고 제보한 증거에 대해 즉시 대조 확인하고 피신고자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제26조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조사 처리한 결과,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제27조 본 방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경영 매장이 없고 법에 의거하여 식품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8조 본 방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 및 지점 혹은 자체 사이트를 구축한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본 방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관련 제도를 수립, 집행, 공개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본 방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전문적인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식품 안전 관리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혹은 요구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자를 교육, 심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본 방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경영 허가증을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명칭, 주소, 법정 대표 혹은 책임자 및 연락처 등 정보를 등기하지 않거나 혹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식품 경영 허가증에 기재된 경영 장소 등 허가 정보가 진실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와 식품 안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

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본 방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요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본 방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한 식품 배송 용기, 식기와 포장재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배송자에 대해 식품 안전 교육과 관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배송업체가 배송자에 대해 식품 안전 교육과 관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요구에 따라 교육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본 방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배송자가 안전하고 무해한 배송 용기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하여 배송자 소재 업체를 처벌한다.

제36조 본 방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자체 사이트 구축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문 정보를 기록, 보관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1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에 대해 샘플링 검사와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방법 제16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

넷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후 즉시 제재하지 않고 외식서비스 제공자 소재지 현(縣)급 식약품감독관리부처에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심각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8조 본 방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요구에 따라 소비자 신고 제보 처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신고 제보 방식을 공개하지 않거나 혹은 소비자 식품 안전에 관련된 신고 제보에 대해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본 방법 제18조 제 (1) 호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원료 통제 조건 제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18조 제 (2) 호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부패 변질, 유지(油脂) 변질, 곰팡이와 벌레, 오염, 이물질, 가짜 혼입 혹은 관능 이상 상태 등 원료로 식품을 가공하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18조 제 (3) 호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 보관, 가공, 세척 소독 등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혹은 보온, 냉장과 냉동 등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점검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18조 제 (4) 호, 제 (5) 호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발주서를 기타 식품 경영자에게 가공 제작하도록 위탁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외식 식품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외식 식품과 품질이 동일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본 방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본 방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신선도 유지, 보온, 냉장 혹은 냉동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을 배송하면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보관, 배송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2조 현(縣)급 이상 지방 식약품감독관리부처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일로부터 업무일 20일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행정 처벌 결정서를 공개한다.

제43조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장(規章)이 소형 외식 온라인 경영에 대해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본 방법에서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 안전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식품 안전 불법 행위 조사 처리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44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안전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외식서비스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 지점에 인터넷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 본 방법의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본 방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